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32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광희·박해철·이재관

이기헌 • 박지원 • 강준현

김문수 • 윤건영 • 허성무

채현일 · 김승원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 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21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피의자의 사건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 중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하여 그 사본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의"를 각각 "第200條제1항의"로 한다.

제2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00조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준

용한다. 이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건의 요지"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생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
		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피의자의 사건에 관하여 고
		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 중 피의
		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
		정하여 그 사본을 출석요구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
		소인, 고발인의 개인정보나 영
		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
		<u>나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를</u>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 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 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 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 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 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 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② ~ ⑤ (생 략)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저

 ~ ③ (생 략)

<신 설>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第200條제1		
항의		
空200枚 利ま [6]		
<u>第200條제1항의</u>		
, ① (청체코 가이)		
② ~ ⑤ (현행과 같음)		
1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00조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건의 요지" 로본다.